



##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잠재적 안전사고위험도 분석

민세홍 · 박종덕\* · 권용준\* · 김석원\*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소방방재공학과, 가천대학교 환경 · 디자인대학원  
소방방재공학과

### Fire Officials and Potential Safety Risk Analysis of Job Stress

Se-Hong Min · Jong-Deok Park\* · Yong-Joon Kwon\* · Seok-Won Kim\*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 요 약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에도 우리는 항상 이 말을 간과해 왔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이지만 이를 외면한 댓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소방력 손실과 근무의욕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하여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도외시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반성하고자 한다.

#### 1. 서 론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등 제반 소방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일상적인 활동공간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각종 재난현장이어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매년 3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도 화재저감 목표달성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학술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실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먼 형식적인 시책연구에 그치고 있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의 3대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하여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일상생활과 최근 3교대 근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제안하였다.

#### 2.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분석

##### 2.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소방기본법」 제 1조의 목적에서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는 모든 소방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이러한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일어나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긴장상태를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방활동 공간은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2 직무스트레스의 발생원인

최근 동국대 안연순 교수팀이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 48.4 %인 반면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50.3 %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함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사실은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절한 연금 및 요양서비스 등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하나 일상적인 생활안전이나 위험제거활동은 소방활동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표1> 소방활동과 순직공무원에 대한 용어 비교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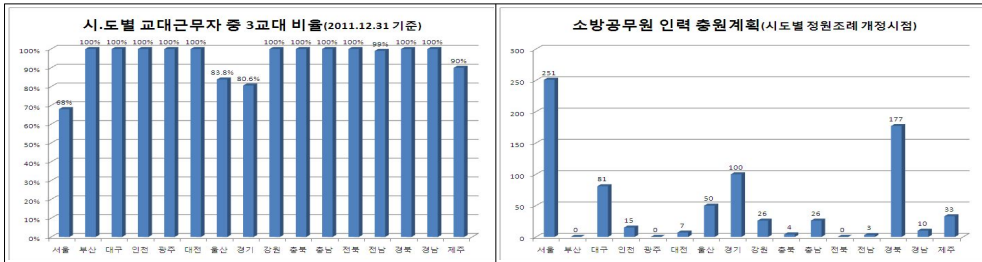
용어	내용	관련법령
순직공무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부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 3조
소방활동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에 필요한 활동	소방기본법 제 16조
소방지원활동	산불, 자연재해, 근접대기, 화재피해복구 등 지원활동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 16조의 2

지난 2011년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에서 고드름 제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시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순직처리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2011년 7월 속초에서 동물구조 활동 중 사망한 사고는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사후처리에 곤란을 겪은 사례들을 보면서 시민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위험한의 재난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2교대 근무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있으나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3교대를 실시하다 보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되었고 현장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 시·도별 3교대 실시비율을 보면 100% 시행한 곳이 16개 시·도 중11개소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80% 이상에 이르고 있지만 충원인력 계획을 보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표2> 시·도별 3교대 실시율 대비 충원계획 비교



셋째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일상생활이 화재 등 현장출동은 기본이고 각종 조사에 이론교육 및 훈련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내 쉴 틈이 없도록 짜여져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월간 진압훈련 시간을 4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야간 심야시간까지 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주간에는 본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예방활동 및 홍보행사와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설치까지 동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번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비번활동에 했던 업무량까지 더해져 단위시간 내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 3.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 3.1 소방활동에 대한 하인리히법칙 적용

하인리히법칙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이며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소방활동 현장은 재난사고의 특성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장소이고 개인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는 있기 마련이다. 불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활동함으로써 특정신체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 부상정도는 아니지만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손상을 입는 경우, 연기의 흡입으로 잦은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작은 재해들이 무수하게 많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들은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며 스스로 치유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사고들이 그때그때 치유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혹은 일상업무에서 더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히려 심

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재난을 보게 될 것이다.

### 3.2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잠재적 위험도 상관관계

2011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순직 8명, 공상 355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 수치만 보더라도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에 비하여 재해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이다. 2011년도 발표한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분석 연구 및 소방업무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모델 개발」 연구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 증상 및 질병력에서 많은 대원들이 사고를 경험하였거나 다양한 질병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48 %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질환 29.1 %, 우울증 등 정신질환 18 % 등 다양한 증세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어느 특정한 재난현장에서의 위험으로부터 기인한 것도 있지만 평소 현장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누적된 경미한 부상과 피로로 인하여 나타난 증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쌓여있는 피로를 충분히 풀어주고 다음 현장활동을 대비하여야 할 대원들은 과중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아져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 3. 결 론

1999년 개정 소방법 목적에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소방업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최근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확대보급 등 대민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난 소방업무에 비하여 소방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사고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고는 일상화되어 있기에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사고비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굳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각종 안전사고와 스트레스성 질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도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세부기준을 꼼꼼히 챙겨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비율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보다 더욱더 헌신하는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분석 연구 및 소방업무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모델 개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2011)
2.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2009)
3. 소방방재청, 2012년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12)
4.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대책 보고(2011)